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9. 20 선고 2020가단12868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특별대리인 C

2. D

변 론 종 결 2022. 8. 23.

판 결 선 고 2022. 9. 20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84,380,076원 및 그중 20,512,692원에 대하여 2020. 5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18. 12. 1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0,281,8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D은 원고에게 40,281,8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노진영

별지